

발 간 등 록 번 호

11-1390000-005059-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대응 방안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CONTENTS

I

개요	03
00. 길라잡이 활용 안내.....	04
0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고려 사항.....	05
02.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07
03. 농업분야 산업재해.....	13

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23
00. 안전보건관리체계 준비 하기.....	24
01. 경영자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25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29
03. 유해·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35
04. 비상조치계획 수립.....	40
05.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46
06.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와 개선.....	48

III

별첨	49
0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0
0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점검.....	54
03. 비상조치 계획 수립.....	65
0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69
05.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안내.....	70
0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71
07.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72
08.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73
09. 농업인안전365 홈페이지 안내.....	77



I

개요

- 00. 길라잡이 활용 안내
- 0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고려 사항
- 02.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 03. 농업분야 산업재해

00. 길라잡이 활용 안내

- 농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산업 중 하나이고 특히, 자가노동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의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중대재해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농사업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활동에 적극 활용되어 농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이 길라잡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고려 사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농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체계 구축 담당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농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담당자**라고 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합니다.
 - 5인 이상 농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직위에 있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를 두는 경우, 업무 수행자 중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감독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내부 직원만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안전보건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농작업과정에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질병 등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고예방의 핵심요소입니다.
 - 농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법과 절차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장의 규모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재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종사자 의견청취

-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운영해야 합니다.
 - 토의, 안전순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회의, 제안제도, 사내 게시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평가(인정)하며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도급, 용역, 위탁업무시 안전보건관리

- 사업장의 업무를 도급, 위탁, 용역으로 수행하는 경우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선정합니다.
 - 소규모 공사일수록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쉬우나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 도급·위탁·용역 업체에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할 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한 사항은 기한 내에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합니다.
 - 특히, 지방노동관서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점검에서 시정을 요구받거나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자 등으로부터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02.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1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18.12월 00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월 00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낮은수준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2024년 1월 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은 적용제외)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적용 합니다.

※ 상시 5인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 15조)

2) 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 8조)
- *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교육이수와 관련된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시행령으로 위임

시행령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교육비 자부담), 안전보건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3) 공표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명칭 등 발생사실을 공표합니다.** (제 13조)

시행령 내용

공표 의무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 발생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을 공표, 소명기회 부여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처벌)하는 동시에,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무엇이 중대재해인가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며, 사업장경영 중 예방하여야 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여기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는 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4개 질병을 선정하였습니다.

- 급성중독, 독성간염, 압착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으로 농업과 관련된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호	질병명칭	설명
1~13	급성중독 (농약, 유해가스)	유해인자가 짧은 기간 내에 생체에 작용하여 급작스럽게 질병상태 (심혈관증상, 호흡기증상, 신경학적증상, 자극증상 등에 빠지는 현상)
18	렙토스피라증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19	탄저, 단독, 브루셀라증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또는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1	압착증	압력에 의해 신체의 조직,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입는 증상
22	산소결핍증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4	열사병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6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누구를 말하나요?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 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보건 관리자를 지휘·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7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제2항)
- ⑤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 ⑥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8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9 도급·용역·위탁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다음 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작업 장 내부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여부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 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여부
 3.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 가능 여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장소 해당 여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 되고 있습니다.

10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상시 5인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예시)

• 상시 근로자 산출 방법

☞ 상시근로자수 =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가동일수

예1) 법 적용사유발생일이 '24.9.15.이고, 산정기간(8.15~9.14) 동안 **가동일수20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인원**이 132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수(6.6) = 132명(산정기간중 연인원) ÷ 20일(산정기간중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예2) 법 적용사유발생일이 '24.9.15.이고, 산정기간(8.15~9.14) 동안에 **가동일수중 15일은 5인 사용, 5일은 3인**을 사용한 경우 (**일시적으로 적게 사용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수(4.5) = {(15일X5인) + (5일X3인)} ÷ 20일

※ 총 4.5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영 제2항 제 1호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예3) 법 적용사유발생일이 '24.9.15.이고, 산정기간(8.15~9.14) 동안에 **가동일수중 15일은 3인 사용, 5일은 12인**을 사용한 경우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수(5.25) = {(15일X3인) + (5일X12인)} ÷ 20일

※ 총 5.2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영 제2항 제 2호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적용**

03. 농업분야 산업재해

1 농업이란?

- 농작업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며, 가축을 기르고 농지를 관리하여 식량과 기타 농산물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적 활동입니다.
- 농작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가져 농업 기술과 혁신에 따라 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확대하여 수확합니다.
- ▶ **(노지농업)** 노지 환경에서 다른 보호구나 인공적인 구조물 없이 자연의 조건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지역적 조건과 작물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 ▶ **(과수농업)** 과일을 생산하는 농업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과수나무를 재배하여 과실을 수확, 주로 식량 생산과는 달리 과일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배 방법이 다양합니다.
- ▶ **(시설농업)** 농작물이나 식물을 실내 환경의 특별한 구조물 또는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구조물은 대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기후 조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작물을 재배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 **(축산)** 실외나 실내 환경의 특별한 구조물 또는 시설에서 가축을 키우며 부산물을 얻는 농업 부문 중 하나로 주로 소나 돼지, 양, 닭, 오리 등을 기르며 동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가축의 사육 환경이 다양합니다.

[분류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농업 (01)	작물 재배업 (0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 재배업
	축산업 (012)	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 농업의 특성상 노동 집중적이며 긴 시간동안 일을 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체력을 소비하고 기계 및 장비 사용과 관련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며, 유통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농업근로자 산업재해

- 2022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업근로자 중 재해자는 682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매년 재해 및 사망사고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해자수(명)	648	642	639	668	682
사망자수(명)	14	9	10	11	12

※ 출처: 2022년 산업재해현황분석(고용노동부)

- 2021년 농업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찢림, 물체에 맞음, 부딪힘 등 신체상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위	발생형태	재해자 수(명)	비율(%)
	합계	668	100.0
1	떨어짐	182	27.25
2	넘어짐	113	16.92
3	끼임	82	12.28
4	절단·베임·찢림	70	10.48
5	기타	46	6.89
6	물체에 맞음	41	6.14
7	부딪힘	39	5.84
8	업무상질병	38	5.69
9	깔림·뒤집힘	19	2.84
10	무리한 동작	19	2.84
11	교통사고	12	1.80
12	화재·폭발·파열	4	0.60
13	무너짐	3	0.45

※ 출처: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고용노동부)

3 중대재해사례

❶ 사다리 위에서 전지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출처: 중대재해사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떨어짐

2017년 11월 오후 2시 56분경
충남 ○○영농조합 내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고,
같은 날 대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사다리작업 안전기준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작업높이 (발을 밟는 디딤대의 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 이상 ~ 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 ~ 3.5m 이하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고용노동부

사고 원인

- 불안정한 작업자세
- 최 상단 발판에서 서서 작업
- 1인 단독작업
- 바닥상태 불량

예방 대책

-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 외 나뭇가지 등에 신체 일부를 지지하지 않고 몸의 중심이 사다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이 닿지 않는 경우 사다리 이동 설치 후 작업
- 최상단 발판에 서서 작업 금지 또는 작업 발판형 사다리 사용
- 작업 시 2인 1조 작업(1인은 사다리 지지), 1인 작업시에는 아웃트리거가 있는 사다리 사용
- 사다리는 바닥면이 평탄, 견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❶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

※ 출처: 중대재해사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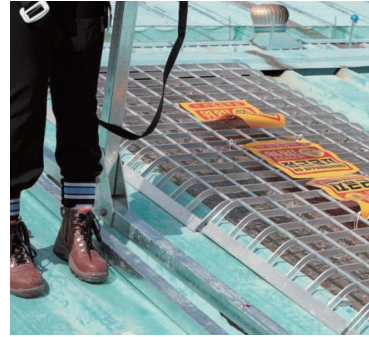
2007년 10월

충남 ○○작업장에서 축사 내부의 자연채광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 4m 아래의 축사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안전난간 및 안전덮개



지붕작업 안전난간



채광창 안전덮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 원인

- 강도가 약해진 슬레이트
- 추락방지 조치 미 실시

예방 대책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 작업 환경에 따라 위 항목의 조치가 불가할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 착용 조치

❶ 트랙터가 농로에서 이탈되어 깔림·뒤집힘에 의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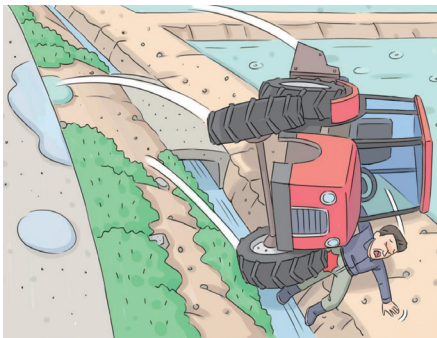
※ 출처: 중대재해사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다 깔림·뒤집힘

2018년 8월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소재 농원내 제초작업을 위하여 중경제초기가 장착된 트랙터로 농원 내 과수원에서 제초작업을 마친 후 농원 창고로 이동 중 농로에서 이탈되어 측면 경사로(45°, 길이 6.5미터) 아래로 전도되면서 트랙터의 연료탱크 측면에 깔려 응급구호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안전벨트 및 운전자 보호용 구조물 (ROPS)



안전벨트 착용



ROPS 설치

사고 원인

- 좁은 농로폭
- 안전벨트 미착용 (트랙터 전복 → 운전자 이탈 → 트랙터와 바닥 사이 등에 운전자 깔림)
- 운전자 보호용 구조물(ROPS : Rollover Protective Structures) 미설치

예방 대책

- 농기계가 안전하게 교차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사용
 - 트랙터 운행 중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 보호용 구조물(ROPS)설치
- ※ 스웨덴의 경우 ROPS 설치 의무화 후 트랙터 넘어짐에 의한 사망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

❶ 양파 적재함의 무너짐에 의하여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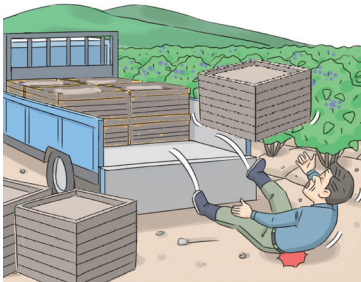
※ 출처: 중대재해사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무너짐

2019년 7월 오후 2시 52분경

경남에 있는 ○○농산에서 3단 높이로 쌓여져 있는 양파 철재 적재함 앞에서 마늘 선별작업을 하던중 약5.25M 높이와 3단 철재 적재함 제일 아래 첫 번째 적재함이 주저 앉으며 무너져 내려 그 적재함에 있던 다량의 양파가 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덮쳤고,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를 받던중 중증 두부손상 및 중증 흉복부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함.

낙하 방지 적재함 및 안전보건표지



낙하 방지 적재함



사고 원인

- 적재함 불량(양파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
- 작업장소 부적정(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예방 대책

- 중량물(농작물 등) 적재에 적합한 강도의 적재함 사용
- 중량물 적재장소와 일정거리 이격하여(중량물 붕괴·낙하시 미접촉) 작업장소 선정

❗ 상토혼합분배기 작업중 회전날 끼임에 의하여 사망

※ 출처: 중대재해사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마 끼임

2022년 6월 20일경

경기에 있는 사업장 내 비닐하우스에서 상토혼합분배기를 이용하여 펠라이트와 상토를 섞는 작업 중, 상토혼합분배기 회전날에 끼어 사망함.

방호장치 및 안전보건표지



방호장치 부착



안전보건표지

사고 원인

- 상토혼합분배기 덮개 미설치
- 작동 중인 기계에 작업자가 접근

예방 대책

- 농업 기계 회전부위 덮개 설치
- 안전수칙 숙지 후 작업
- 청소·수리작업 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후 작업
- 기계·기구의 위험부위에 주의 및 경고 표시

❶ 돈사정화조 내부 청소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에 의하여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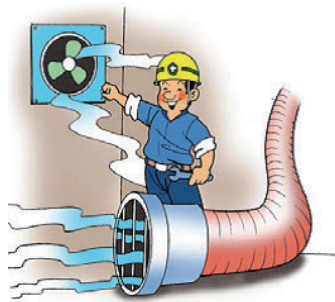
※ 출처: 중대재해사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바 중독

2017년 5월 12일 경

경북 군위 소재 양돈 농사업장에서 정화조 내부의 청소작업을 위해 정화조에 들어가 작업중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가스농도 등 측정 및 환기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작업장소 상시 환기

사고 원인

- 환기 미실시
-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 정화조 내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 및 작업 중 계속해서 환기
- 상시 작업 상황을 모니터하는 감시인의 외부 배치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비상시 피난, 구출용 로프,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 등 기구 비치

❶ 밭에서 작업중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사망

※ 출처: 2021년 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질병관리청)

사 폭염

2021년 7월 14일 14시경

80대 여성 농업인이 폭염주의보인 상태에서 밭에서 일을 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이웃주민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함.

폭염 대비 건강수칙



여름철에는 기온, 폭염특보 등을 매일 확인하세요!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수칙

사고 원인

- 고령으로 인한 근력/위험상황 대처 능력감소
- 고온에 장시간 노출

예방 대책

- 농작업시 기상 상황 수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 착용
-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부여
- 고온시 규칙적으로 물마시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취하기, 응급 시 발빠르게 대처하기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 00. 안전보건관리체계 준비하기
- 01. 경영자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 02. 유해·위험요인파악
- 03. 유해·위험요인제거, 대체 및 통제
- 04. 비상조치계획 수립
- 05.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06.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와 개선

00. 안전보건관리체계 준비 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매뉴얼을 따라가면서 준비해 봅시다.

아래 순서와 같이 하나씩 준비해 간다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재해 없는 안전한 농장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경영방침 수립, 예산 설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참여)



2

작업환경 및 설비, 작업절차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의견 청취)



3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 및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합니다.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4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및 재해자 발생시 조치)



5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6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01. 경영자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부여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참고]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 농장은 사업장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장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사업장 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4.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월 ○○일

○○○ 농장 대표(○○○ 서명)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경영책임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하며, 종사자와 협의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등 특성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달성할 수 있고 측정 및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전체, 본사, 부서별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위험요인 개선 조치 건수

- 종사자 의견 건수
 - 안전보건 교육 실시 횟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횟수

예산을 배정합니다.

- 경영자는 현장의 모든 일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상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치와 안전모, 안전화 구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 ▶ 특히,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것이 개선되었는지 관리감독자를 통해 확인·점검합니다.

[참고]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예시)

-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이행여부를 계속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목표는 분야별, 공정별로 작성하면 이행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			결재	작성		검토		승인			
				작성	검토	검토	승인				
전사 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예산 (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작업안전 사고 Zero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500	총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이행 100%	-	총무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10명)	100	총무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1명)	-	총무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주기 (트랙터 5대, 컨베이어 3대)	50	총무		
		실적									

1-2 관리감독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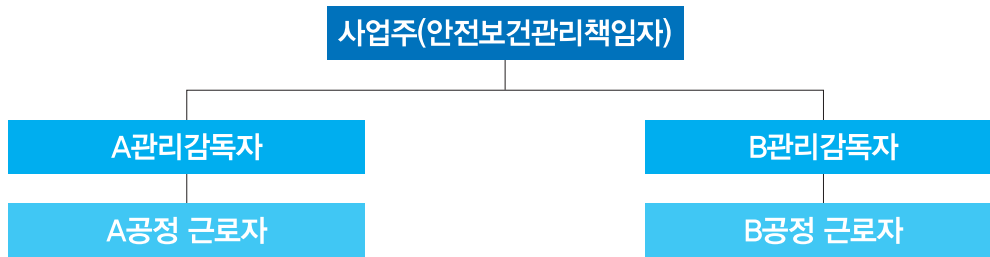
※관리감독자 : 작업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자를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해당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30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할수 있음.

50인 미만 농업 사업장 안전보건조직도 (예시)



구분	책무 및 역할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1.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2.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3.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에 대한 협조 5. 위험성평가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정기적 반기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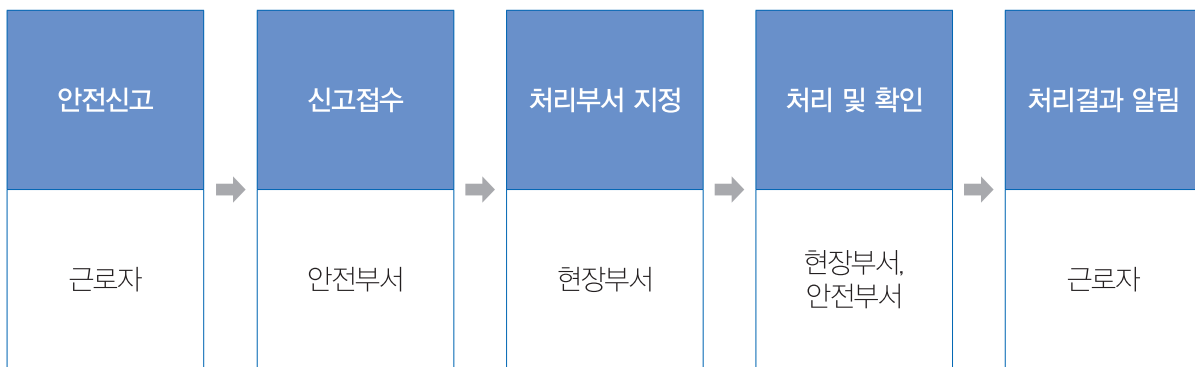
[참고] 관리감독자 현황 작성해 보기 (예시)

구분	성명	직무	배치/선임	자격/교육이수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관리감독자	최○○	농작업 현장업무 총괄	'22.3.1	관리감독자교육('24.3)

1-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모든 근로자가 참여

-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나 농작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주위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농사업장 기계 설비 등의 안전조치 상태 유지, 작업장 정리정돈, 지정 보호구의 착용,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사업주 및 다른 근로자와 협력합니다.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신고절차 예시)



- 안전보건신고·제안제도
 - 작업장 내의 기계, 설비 및 작업 환경에서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신고·제안을 통해 잠재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고나 제안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상품권 지급 등)를 운영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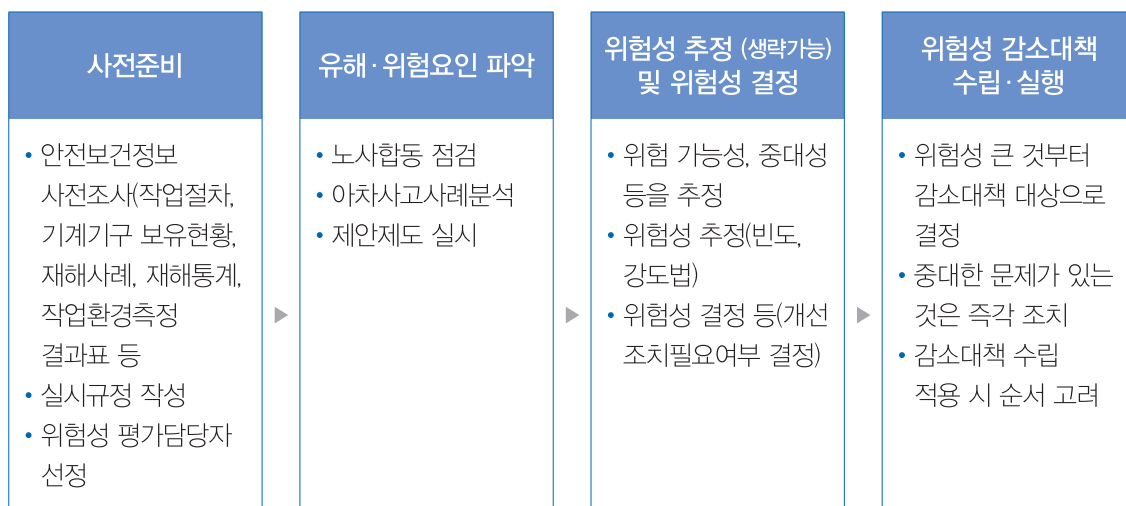
농작업관련 유해·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2-1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농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시작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질병 등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사고예방의 핵심요소입니다.

- 위험성 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공유 및 기록 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절차에 근로자의 참여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는 어떻게 정하나요?



☞ 위험성 평가 결과는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공유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위험성 평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한 가지 방법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농사업장의 업종·규모·공정의 복잡성 등 여러 특징을 고려하여,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① 3단계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과 함께 기존에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활용되던 ④ 빈도·강도법이 있습니다.

2-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농작업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이란 농업인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말합니다.

- 화학적 요인 : 농약, 무기분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 물리적 요인 : 소음, 진동, 온열 등
- 생물학적 요인 : 유기분진, 미생물, 곰팡이 등
- 인간공학적 요인 : 작업자세, 중량물 부담 등
- 정신적 요인 : 스트레스 등

농장 및 농업작업에서의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

구분	위험요인
이동 및 운반	• 좁고 경사진 통로 넘어짐, 중량물 운반시 압착/깔림/근골격계 손상
농기계사용	• 농기계 사용시 충돌, 끼임, 베임, 신체 말림, 추락
농업 작업	• 농기구에 의한 베임, 사다리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짐
작업 환경	• 농약에 의한 중독, 피부 손상, 분진, 감염, 산소 결핍, 소음, 자외선과 온열질환
전기, 화재	• 전압, 감전 등에 위험, 가연성 물질, 폭발성 물질
가축	• 밟힘, 반힘, 물림, 분노, 인수공통전염병, 의약품 관리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2-3 유해·위험요인 찾기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에서 유해·위험 찾아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입니다. 오른쪽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밖에 아래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확인해 봅시다.(본문 p54~60)

구분	내용
중량물운반	• 중량물운반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54)
농기계 안전	• 농기계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55)
농약 사용	• 농약 사용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57)
분진·가스	• 분진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58)
감염 예방	• 감염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p58)
소음	• 소음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58)
자외선과 온열	• 자외선 온열환경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59)
전기·화재	• 전기 및 화재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59)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안전 관리 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p60)

농기계 위험요인을 파악해봅시다!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인
 트랙터	작업기를 장착, 견인 또는 구동하여 작업하는 농업용 트랙터로서 운전자가 탑승하여 작업할 수 있는 농기계	경운·파종·중경·제초·수확·운반다양한 용도	충돌, 끼임, 베임, 신체 말림, 추락 등
 경운기	작업기를 장착, 견인 또는 원동기를 이용하여 보행하면서 작업하는 농기계	토지 경작 및 씨뿌리기·운반 등과 탈곡·양수	끼임, 신체 말림, 넘어짐 등
 콤바인	엔진을 사용하여 농경지에서 수확한 곡물을 탈곡하여 자루나 통에 쏟아주는 농기계	곡물을 베고 탈곡 및 선별·정선	신체 말림, 추락 등
 이앙기	엔진이 달린 형태로 모내기를 할 때 모판의 벼를 일정 간격으로 논바닥에 심는 농기계	자동으로 모내기	신체 말림, 추락 등
 예초기	소형 엔진을 이용해서 날을 회전시켜 풀을 베는 도구	잡초를 정리하는 용도	절단 및 베임, 분진 등
 농약 분무기	엔진식 동력을 사용하여 농약을 뿌리는 도구	농약을 칠 때 사용	농약중독 등

구분	설명	용도	위험요인
 농용 운반차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농업용 운반차량	적재 및 운반	넘어짐, 떨어짐, 중량물 맞음 등
 사다리	발판을 발로 밟고 세로대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통행할 수 있는 설비	높은 곳 올라갈 때 사용	떨어짐, 넘어짐 등
 낫	손잡이를 잡고 칼날 부분을 사용하여 잡초를 베는 농기구	풀·곡식의 대 등을 베기	베임 등
 괭이	손잡이를 잡고 날 부분을 끌어당기며 작업하는 농기구	땅 일구기, 씨앗 심을 구멍파기	반복자세, 넘어짐 등
 호미	한손을 이용하여 풀을 메거나 땅을 고르는 농기구	잡초 제거, 흙 북돋워 주기, 흫덩이 분쇄, 땅파기	반복자세, 베임 등
 다목적 가위	칼날 부분을 이용하여 작물을 관리하는 농기구	정지 및 전정	베임

2-4 근로자 의견 청취 하기

-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 ① 안전보건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 경영방침, 목표, 규정, 안전보건 관련 회의, 안전관련 모든 현황 등
 -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방식은?
 - 노사간담회, 각종 회의시간, 안전보건 제안제도 또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점검회의, 안전제안 활동

- 안전점검회의 :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의 상황에 맞도록 실시하는 위험 예지 활동
 - 작업개시 전 5~15분, 작업종료 후 3~5분 정도 실시
 -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함으로써 안전을 선취하는 방법
- 안전제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 받는 활동
 - 제안을 독려하고 제시한 의견의 검토, 조치결과를 공개하며 인센티브도 제공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이란?

(개요)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 작업 단위 별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시간 회의를 말합니다.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합니다.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안전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 결과 안전보건의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참고]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조치 결과 관리표 (예시)

일시	제시한 의견	검토결과	조치결과	조치일자
23. 10. 16	농기계 비상정지장치 인식하기 어려움	안전 스티커 부착 필요	비상정지장치 안전 스티커 부착 완료	23.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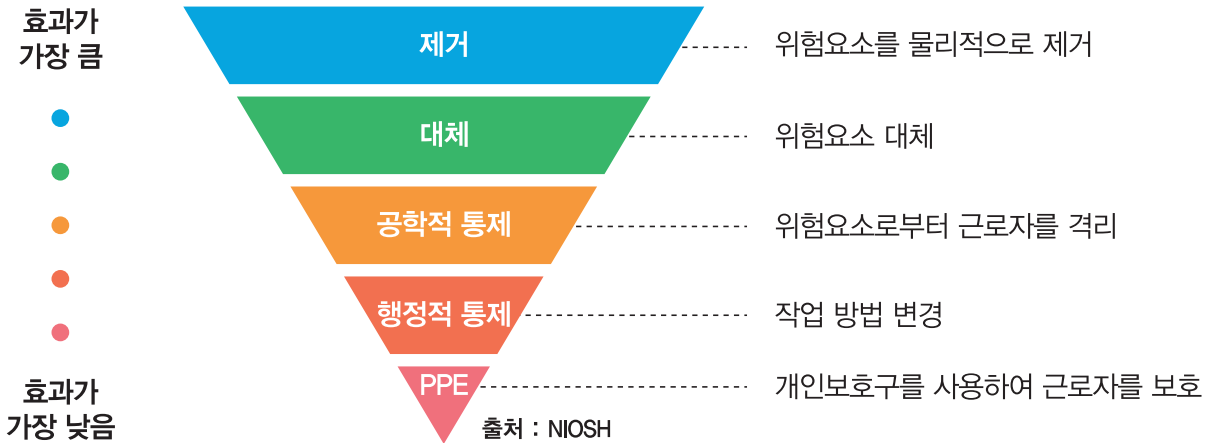
03. 유해·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합니다.

3-1 유해·위험관리 방안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면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과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거할 수 없다면 유해·위험요인의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통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이 제거되었거나 통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작업과정상 위험 작업인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유해·위험관리 방안과 효과



관리 방안	내용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적 위험 요인 자체를 제거 (작업 자동화 등) • 달성하기 가장 어려우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 추진 필요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이 낮은 작업방식·시설·물질로 대체 (저독성물질로변경 등)
공학적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위험수준을 줄일수있도록 설비를 통제 (방호덮개 설치 등)
작업절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준수할 수 있도록 행동의 통제 (교육, 감독)
개인 보호구 (PPE)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거·대체·공학적 제어 등이 불가능할 경우 적용 (안전모 착용 등) ※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위험요인별 관리방안과 예시

위험요인		관리방안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PPE) 방안
인간공학적 요인	작업자세	불안전한 자세(과도한 굽힘, 뒤틀림)가 발생치 않도록 작업장, 작업방법 개선	운반용 대차 사용	작업절차 준수, 휴식시간 부여 및 휴게장소제공	스트레칭, 2인 1조작업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물리적 요인	소음·진동	저소음, 저진동기계 도입	소음격리·밀폐, 방진제 사용	적정한 휴식시간 부여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착용
	온열	-	그늘막 설치	물, 음료 비치	작업시간 조정 (낮시간작업 금지)
생물학적 요인	유기분진·미생물·곰팡이	유해물질 제거	-	-	방진마스크 착용 작업 후 세안
화학적 요인	농약	친환경농약 대체	자동살포(드론등)	살포시간 제한 방제기구 점검	방독마스크 및 방수성 방제복 착용
	분진	분진 저발생원료 사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분진장소 출입금지	호흡기 보호구 착용

[참고] 위험요인별 관리방안 수립양식

-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며,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 위험요인별 통제방안은 검토하고, 개인보호구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참고] 위험요인별 관리방안 수립양식 (예시)

- 「**핸드그라인더 사용**」
- ▶ 농작업중 핸드그라인더를 사용 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요인	• 핸드그라인더 사용 중 누전 등에 위한 감전위험	
관리 방안	제거·대체	• 감전위험이 없는 공압식또는 충전식사용
	공학적 통제	• 감전위험이 낮은 2중 절연구조(외함미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보호) 사용 • 접지극에 접속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
	관리적 통제	•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사용 금지
	보호구 방안	• 절연화, 절연장갑 등 보호구 착용

[참고] 위험요인별 관리방안 수립양식 (예시)

• 「**병충해 방제**」

▶ 병충해 방제에서는 농약중독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요인		• 농작물에 농약 살포 작업 중 중독
관리 방안	제거·대체	—
	공학적 통제	• 자동살포(드론)로 노출시간 최소화
	관리적 통제	• 작업 전 농약의 안전정보 및 취급설명 숙지 • 방제기구 점검(과충전, 누유등) • 비상상황 시 농약을 씻어낼 수 있는 물 비치
	보호구 방안	• 농약 방제복 및 방수모자, 활성탄이 들어간 마스크

• 「**농기계 작업**」

▶ 농기계 작업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신체 절단 및 베임 위험이 있으며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요인		• 농기계 회전부에 신체 절단 및 베임 • 농기계 운전 중 부딪힘 및 전복
관리 방안	제거·대체	—
	공학적 통제	• 끼임우려가있는 곳에 덮개 부착 •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비상시 급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등)
	관리적 통제	• 수리, 점검, 청소 등의 작업시 동력 차단 후 실시
	보호구 방안	• 농기계 운전시 신체에 맞는 옷 및 장갑, 안전화, 안전벨트 착용

이것만 관리해도 중대재해 절반은 막을 수 있다.

위험의 종류	안전대책
사다리 작업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장소에서는 사용을 피합니다. ②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③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④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로 작업을 합니다. ⑤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농기계 작업 (떨어짐, 전복, 충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기계가 움직일 때는 승하차를 하지 않습니다. ② 손잡이를 이용하여 농기계를 바라보는 자세로 승하차를 한다. ③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④ 음주운전을 절대 금지합니다. ⑤ 모든 탑승자는 언제나 신체에 맞는 옷을 착용합니다. ⑥ 모든 탑승자는 언제나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습니다.
예초 작업 (베임,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날카로운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농기계·기구의 사용법을 확실하게 숙지합니다. ③ 작업영역 안에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④ 농기계·기구에 손이나 발 등을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⑤ 모든 사용자는 언제나 장갑 및 신체에 맞는 옷을 착용합니다.
중량물 취급 (근골격계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정 작업 할당량을 정해두고 작업합니다. ② 휴식시간을 미리 확보하고 작업합니다. ③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진행해줍니다. ④ 적재 중량물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⑤ 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자세는 가급적이면 취하지 않습니다.
농약살포 (중독, 피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 전 농약병에 붙은 안전표지, 취급설명서의 위험경고 설명을 읽습니다. ② 사용기계, 장비의 활용방법을 확실히 인지합니다. ③ 주변환경에 농약을 씻어낼 수 있는 물을 준비합니다. ④ 작업중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⑤ 모든 사용자는 농약방제복, 방진 마스크, 방수모자를 착용합니다.
열사병 (온열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② 챙이 넓은 모자 착용하고 썬크림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합니다. ③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④ 작업장은 그늘막 등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이 되도록 합니다. 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 중 규칙적으로 섭취 합니다. ⑥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합니다. ⑦ 무더운 시간대(12~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야외작업을 최소화 합니다.

[참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 (예초기)

- 아래의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중인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의 체크리스트기법을 이용한 평가결과 예시입니다. 체크리스트기법은 각 설비별로 평가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 예초기		평가일시: 2024-03-02			평가자: 관리감독자			
대상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예초기	예초기날의 안전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		예초기 날에 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24-03-11	24-3-12	관리감독자
예초기	엔진부에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						
예초기	본체와 등 받침대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						
예초기	스위치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예초기	장시간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은 없는가?		√		1일 4시간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발생 가능성이 있음 ①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휴식시에 휴게공간 이용(소파 비치) ② 작업시작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24-03-11		관리감독자
예초기	수리·청소 등 비정상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는가?	√						
예초기	작업자는 작업시 보안면,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는가?		√		작업시 보안면,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착용 ① 작업시작전에 현장관리감독자 보호구 착용확인 ② 보호구 미착용시 작업 제외 및 벌점 부과	24-03-11		관리감독자
예초기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가?		√		작업시 안전모 착용	24-03-11		작업반장
예초기	2인 이상 동시 작업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가?		√		2인 동시작업시 10m이상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24-03-11		작업반장
예초기	작업시 주변 주민이나 농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되어 있는가?		√		작업시주변 주민 및 농민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 ① “예초작업 중으로 접근시 위험” 표지를 통행로 상에 설치(간판형태) ② 예초작업 주변에 주민이나 타 농민 접근치 못하도록 라인(테이프 등) 설치	24-03-01		관리감독자

04. 비상조치계획 수립

급박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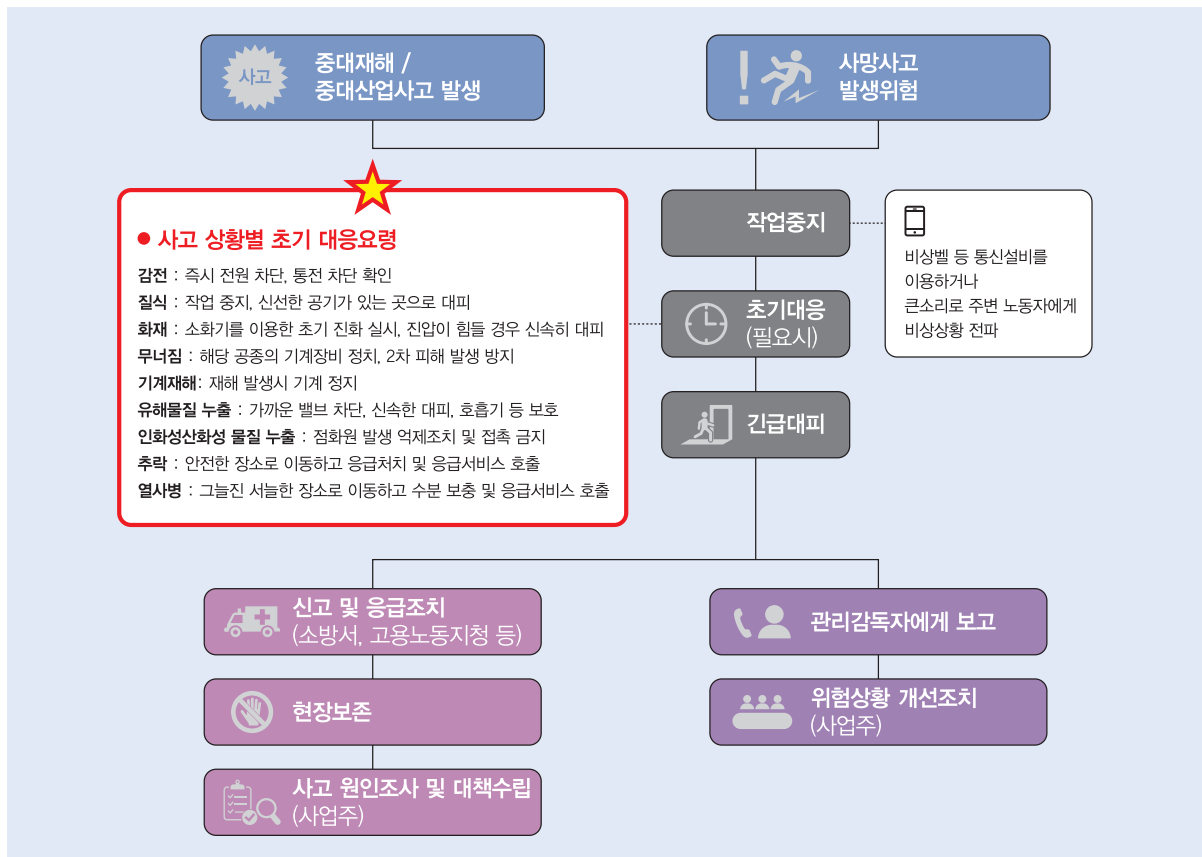
4-1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항)

매뉴얼 주요 내용

-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중대산업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예시



대응 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기계·기구별 비상정지·전원차단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명시

• 매뉴얼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도급·용역·위탁 받은 자의 근로자 포함)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 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도급·용역·위탁 시 소통체계 부실로 대처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작업장소에서 근로자 대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시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구호 조치

•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분	업무내용
① 신속한 연락과 처치	① 재해발견자는 피해 상황 파악/응급조치 (전원차단, 기계정지 등) ② 119신고 및 비상연락체계 전파
② 현장 응급처치 시행	② 응급처치 시행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분	업무내용
① 재해 원인조사	① 사고조사
② 초기대응	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즉시 개선 ② 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종사자 등) ③ 조치 결과를 해당기관장,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보고

[참고] 비상대책 시나리오와 비상훈련 실시 (예시)

- 비상대책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조치계획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비상훈련계획서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예시)

훈련구분: 예초작업 시 베임사고 대비 훈련
 훈련일자: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훈련장소: 〇〇군 〇〇리
 대상인원: 작업자 전원
 훈련목적: 작업 시 베임사고 대처 방법 숙지
 훈련내용: 베임사고 발생 시 소독, 지혈 등 응급처치 방법
 훈련개요:

1. 목적

- 예초작업 중 베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인적손실 최소화

2. 방법

- 사고자 발생 → 관리감독자알림 → 119 연락 → 환자 환부상태확인 → 응급처치 → 환자 이송 → 환자 인계 지점 도착

비상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예시)

훈련구분: 예초작업 시 베임사고대비 훈련
 훈련일자: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훈련장소: 〇〇군 〇〇리
 대상인원: 작업자 전원
 훈련목적: 작업 시 베임사고 대처 방법 숙지
 훈련내용: 베임사고 발생 시 소독, 지혈 등 응급처치 방법
 훈련개요:

훈련 내용	훈련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초작업시 베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소독 및 지혈방법 미숙 119연락시 초동 대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방법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수사다리 사용시 추락 대비 훈련 실시

4-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제1항제1호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였을때,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①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합니다.
- (보고 및 현장)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②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참조 : 산업재해조사표 (p68)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가스,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

▶ (보고사항)

-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 (제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제외

산업재해 사실 기록 및 보존 사항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④ 산업재해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대책수립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

① 단계	▶ 사실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② 단계	▶ 재해요인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③ 단계	▶ 재해요인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④ 단계	▶ 계획(대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 수집

-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

[참고] 사고조사 보고서 (예시)

- 사고조사 보고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질병)에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장 명 : ○○ 양돈농장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조사반	소속	성명	소속	성명	
		○○농사업장	김○○		
사고명	떨어짐사고		사고일시	2020.03.03	
인적 피해	소속: ○○농사업장	성명: 최○○	직급: 농작업근로자		
물적 피해	없음				
사고장소	돈사지붕슬레이트 작업중 바닥에 추락	상해부위	머리	사고형태	추락
사고내용	돈사의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도중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추락함				
사고원인	- 강도가 약해진 슬레이트 - 추락방지 조치 비미				
피해내용	- 사망				
의사/외부 전문가소견	- 두개골 함몰골절에따른 사망				
재발방지 대책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설치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 작업 환경에 따라 위 항목의 조치가 불가할 경우 추락방호망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착용 조치				
기타내용 사고조사 사진					

05.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5-1 농업에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추가 필요

- 안전보건관리 대상에는 도급·용역·위탁 업체도 포함해야 하나요?

네, 포함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업이 계절적으로 작업량의 편차가 커서 계절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도급·용역·위탁업체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농업현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지만, 소규모 농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를 보면 수급자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자체가 없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 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
- ② 도급·용역·위탁 시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③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도급·용역·위탁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안전보건의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업무내용
① 충분한 정보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합니다. • 전달해야 할 정보를 미리 자료로 만들어 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② 작업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 안내 또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방송이나 안내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합니다.) • 넓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소그룹 단위의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위험상황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평가 (예시)

- 도급·용역·위탁 업체는 우리 농사업장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작업을 종료하고 안전하게 나갈 때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관리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잘 이루어지는지 정기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명 : ○○ 인력지원센터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평가 내용	적합여부	서명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농작업자와 농업 인력을 매칭하는 형태로, 농작업·농기계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함	적정	

점검표 및 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정	미흡
1	유해 위험 알기	수행하는 농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	○	
2	안전도구준비상태	필요한 농작업도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음	○	
3	근로자 교육상태	농작업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았음	○	
4	현장 위험정보파악	우리 농사업장의 유해위험성을 알고 있음		○
5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함(보호구 착용 등)	○	
6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인지함		○
7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함	○	
8	비상대책	비상시 작업중지, 대피 및 보고절차 인지		○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농작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	
평가 후 조치 결과 및 내용		현장위험정보 전달 보충교육, 담당 신호수 별도 지정 및 작업중지 안내문 전달 등		

06.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와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1~5 까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나요?

지금까지 각 단계를 충실히 따라오신 것에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조직과 개인에게 체득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개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 (반기 1회 이상)으로 확인 합니다.
-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④ 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의 보고와 근로자에게 교육 등 전파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⑤ 도출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등) 배정 여부 및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이 포함된 조치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 반기 1회 이상

-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② 최고경영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 (제8호)
-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제9호)



III

별첨

0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 [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 [서식]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 [서식] 관리감독자 현황 및 관리감독자 대상 업무수행 평가

0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점검

- [서식] 유해·위험요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서식] 위험 기계·기구·설비 파악 리스트
- [서식]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조치 결과 관리표
- [서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보고서
- [서식] 위험요인별 관리방안 수립

03.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서식] 재해발생 위험 대응 매뉴얼
- [서식] 비상훈련 계획서
- [서식] 비상훈련 결과보고서
-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0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서식]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보건 평가

05.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안내

0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07.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08.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09. 농업인안전365 홈페이지 안내

0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관련 시행령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
행
령
4
조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반기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평가, 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반기 1회 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등 대비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반기1회이행 여부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
행
령
5
조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 2)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3)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점검
- 4) 미 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받을 것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

○○○ 농장은 사업장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장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사업장 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4.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월 ○○일

○○○ 농장 대표 (○○○ 서명)

✓ [서식]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예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			결재				작성		검토		승인	
전사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예산 (만원)	달성율 (%)	실적 / 부진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작업 안전사고 Zero	위험성평가	계획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실적										
	안전검사	계획										
		실적										
	소방시설 정기점검	계획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실적										
	TBM 실시	계획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실적											
경영자검토	계획											
	실적											

✓ [서식] 관리감독자 현황 (예시)

구분	성명	직무	배치/선임	자격/교육이수

✓ [서식] 관리감독자 대상 업무수행 평가 (예시)

사업장 명 :

점검일자: 20 년 월 일

사업주 명 :

연번	평가항목	주요 내용	평가 결과 (적정, 미흡)	개선 방안
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별지 작성 가능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역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위험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0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점검

✓ [서식] 유해·위험요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중량물 운반

구분	내용	예	아니오
농작물 운반	- 작업환경의 통로를 넓고 깨끗하게 하였습니까?		
	- 계단으로 된 곳에는 경사로를 만들어 턱이 없도록 하였습니까?		
	- 바퀴가 달린 보조 운반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중량물 운반하는 위치와 운반거리는 최소화로 되어있습니까?		
	-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릴때 바른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물건을 운반할 때 물건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였습니까?		

운반작업 개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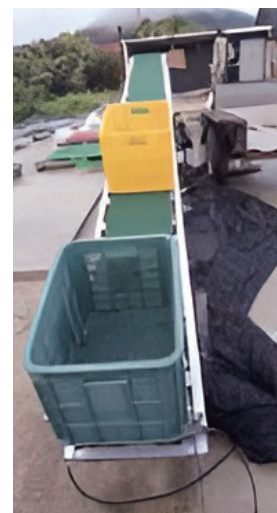
[작업명: 운반 작업]

개선 전



인력이나 손수레를 이용하여 농자재를 운반하므로 노동강도 증가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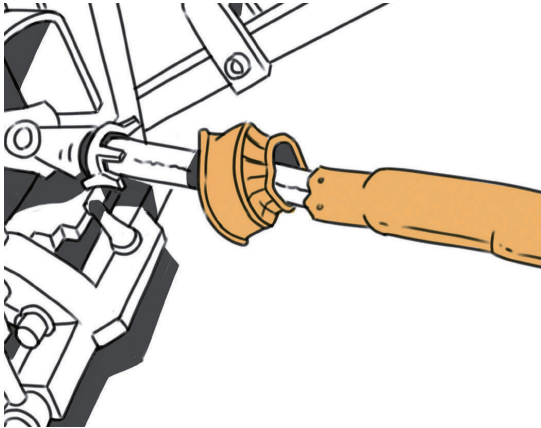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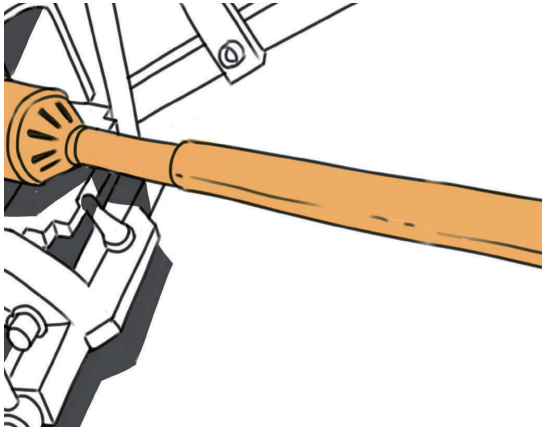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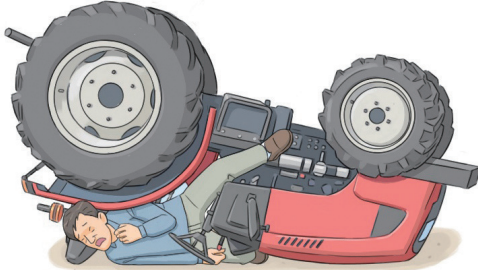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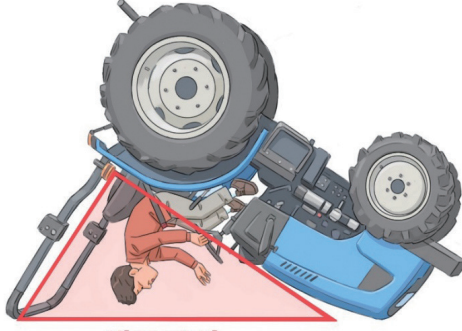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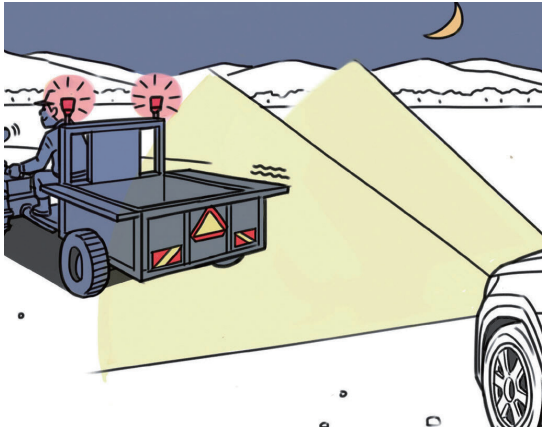


전동운반차와 컨베이어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노동력 감소

농기계 안전

구분	내용	예	아니오
농기계 안전	-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농기계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전할 때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음주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십니까?		
	- 작동중인 회전부에 손이나 발 등을 접촉 하신적이 있습니까?		
	- 농기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도구를 교체할때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잠그십니까?		
	- 안전프레임 및 안전캡을 장착하셨습니까?		
	- 운전석에 동승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 농기계 작동 중 승하차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 하차 시 핸드레일을 잡은 상태에서 운전석을 향한 자세로 하차하고 계십니까?		
	- 운전석의 바닥과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주기적으로 농기계 유지 및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곳에는 방호커버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셨습니까?		
	- 긴급 멈춤 스위치, 경고 표시, 작동법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하셨습니까?		
	- 옷이나 신체가 말려들어 가지 않게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하셨습니까?		
	- 적절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머리 보호구, 안전화, 절단방지 보호복 등)를 착용하셨습니까?		

농기계 안전 개선 사례

개선 전	개선 후
	
회전체 커버 미 부착 및 손상	회전체 커버 부착 및 정비
	 <p style="text-align: center;">생존공간</p>
트랙터 운전자 보호 구조물(ROPS) 미설치	트랙터 운전자 보호 구조물(ROPS) 설치
	
야간 반사판 및 저속차량 미표시	야간 반사판·저속차량 표시 및 후사경 설치

농약사용

구분	내용	예	아니오
농약 사용 안전	- 농약의 안전정보 및 취급설명에 대한 설명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 농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 사용한 농약병과 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 후 안전하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방제복, 장갑, 장화, 마스크, 보안경, 모자 등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계십니까?		
	- 개인보호구 사용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개인보호구를 세척하고 계십니까?		
	- 농약을 다루는 모든 장소에서 위급상황시에 농약노출 부위를 씻어낼 수 있는 물이나 세척수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농약중독에 대한 응급처치방법과 비상연락처를 알고계십니까?		
	- 농약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비누로 샤워를 하고계십니까?		

[작업명 : 위험물질(농약) 관리]		[작업명 : 방제 작업]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내용: 농약보관함 사용으로 농약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축소		개선 내용: 방제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농약중독 피해 예방	

분진·가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분진, 가스 안전	- 밀폐공간일 경우 공기중 유해물질(엔진 가스, 먼지 등)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 밀폐공간에서 유해물질(엔진 가스, 먼지 등) 배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계십니까?		
	-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감염예방

구분	내용	예	아니오
감염 예방	- 상처가 난 피부에는 방수밴드를 붙이고 작업하고 계십니까?		
	- 감염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계십니까?		

소음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소음	- 작업장의 소음수준을 측정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 소음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음보호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소음 발생 시 소통 불능으로 비상 작업 중지 같은 중요 수신호를 지정했습니까?		

자외선과 온열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자외선과 온열 환경	- 작업하는 동안 시원한 곳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 장시간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주위에 그늘막이 있습니까?		
	- 물을 항상 휴대하여 자주 마시고 계십니까?		
	- 무더위로 인한 탈수, 열사병 등에 대한 예방과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계십니까?		
	- 자외선을 차단하기에 적절한 의복(모자, 토시, 긴팔상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계십니까?		

전기·화재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전기·화재 안전	- 장치의 청소, 유지보수를 하기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계십니까?		
	-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배전판, 전선 연결 부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 스위치, 기계조작판, 배전판에는 식별하기 쉬운 표시를 부착하시고 계십니까?		
	- 화재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표지가 되어있습니까?		
	- 소화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작업장 안전 관리

구분	위험성감소 대책	예	아니오
작업장 안전 관리	- 실수를 줄이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지나 라벨을 부착하고 계십니까?		
	- 무거운 적재물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두고 있습니까?		
	- 위험장소(경사지, 사료 더미의 경사, 구덩이 등)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계십니까?		
	- 연장이나 도구는 랙이나 다층 선반을 이용하여 정리 정돈을 하고 계십니까?		
	- (사일로, 비료저장고, 화학물질 저장고, 축사 등)의 문에 어린이나 방문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잠그고, 적절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있습니까?		
	- 창고, 축사,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했습니까?		

개선 전	개선 후
	
<p>야간작업시 하우스 출입구 조명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p>	<p>야간작업시 하우스 출입구에 태양광 전원 이용 작업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p>





[서식] 위험 기계·기구·설비 파악 리스트 (예시)

위험 기계·기구·설비 리스트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인

구분	작동 원리	용도	위험요인
 트랙터	작업기를 장착, 견인 또는 구동하여 작업하는 농업용 트랙터로서 운전자가 탑승하여 작업할 수 있는 기종	경운·파종·중경·제초·수확·운반 다양한 용도	총돌, 끼임, 베임, 신체 말림, 추락 등
 경운기	작업기를 장착, 견인 또는 원동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농업기계로 보행하면서 작업	토지 경작 및 씨뿌리기·운반 등과 탈곡·양수	끼임, 신체 말림, 넘어짐 등

 [서식]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조치 결과 관리표 (예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조치 결과 관리표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일시	제시한 의견	검토결과	조치결과	조치일자

✓ [서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보고서 (예시)

안전점검회의(TBM) 보고서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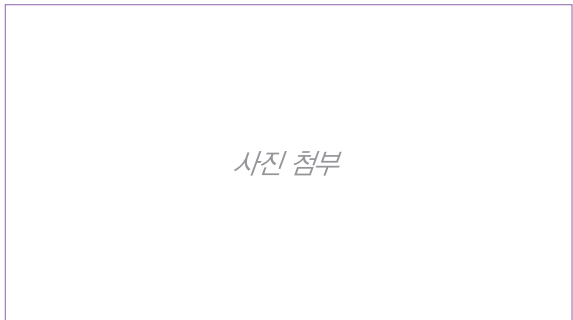
작업명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 작업방법	안전작업방법 확보 여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서식] 위험요인별 관리방안 수립 (예시)

위험요인별 관리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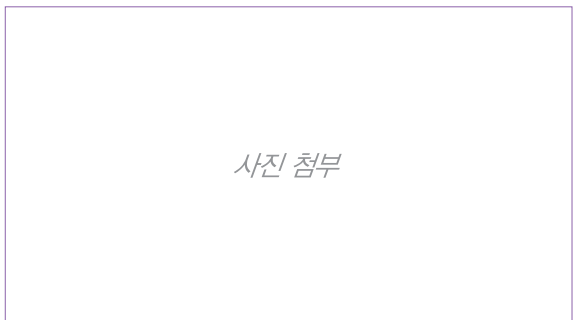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위험요인		
------	--	--

관리 방안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관리적 통제	
	보호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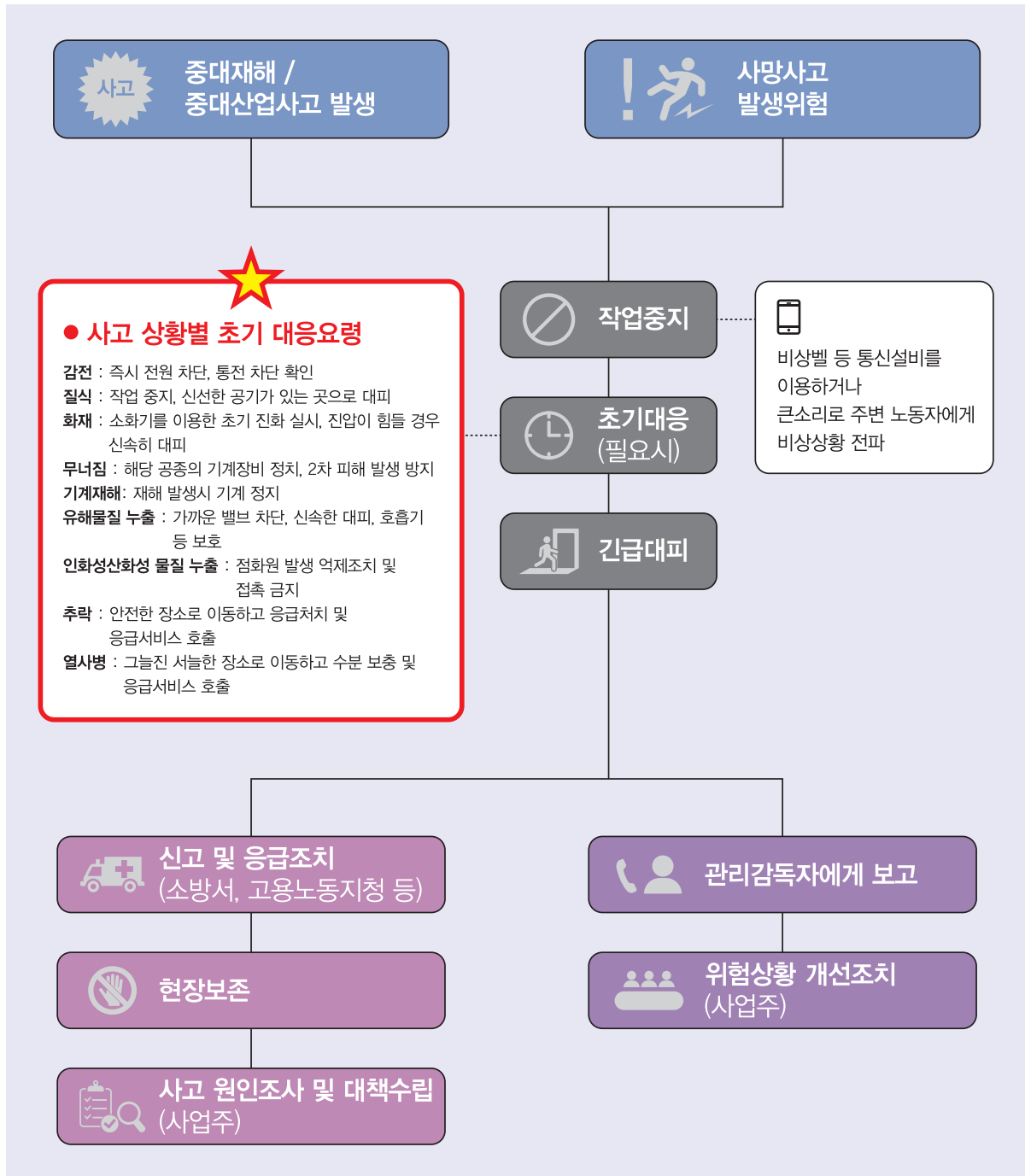


위험요인		
------	--	--

관리 방안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관리적 통제	
	보호구 방안	

03. 비상조치계획 수립

✓ [서식] 재해발생 위험 대응 매뉴얼 (예시)



① 공유방법:	예시) 게시, 교육, 문서 시행
② 해당절차훈련 :	예시)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③ 이행여부 평가 :	예시) 6월, 12월

현장 관리감독자
 성명 :
 연락처 :

✓ [서식] 비상훈련 계획서 (예시)

비상훈련계획서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훈련구분:

훈련일자: ○○○○년 ○○월 ○○일

훈련장소

대상인원: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개요:

1. 목적

—

2. 방법

—

✓ [서식] 비상훈련 결과보고서 (예시)

비상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자 : (서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훈련구분:

훈련일자: ○○○○년 ○○월 ○○일

훈련장소:

대상인원: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개요:

훈련 내용	훈련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계획

☑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민간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현장 명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IV. ⑳재발 방지 계획	
---------------	--

※ ⑳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작성자 성명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 · 공정	□□□ □□□	기인물 작업내용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0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서식]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평가 (예시)

▶사업장 명 : ○○ 인력지원센터 점검일자: 20 년 월 일

평가 내용	적합여부	서명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농작업자와 농업 인력을 매칭하는 형태로, 농작업·농기계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점검표 및 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정	미흡
1	유해 위험 알기	수행하는 농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		
2	안전도구준비상태	필요한 농작업도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음		
3	근로자 교육상태	농작업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았음		
4	현장 위험정보파악	우리 농사업장의 유해위험성을 알고 있음		
5	작업전안전점검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함(보호구 착용 등)		
6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인지함		
7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함		
8	비상대책	비상시 작업중지, 대피 및 보고절차 인지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농작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05.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안내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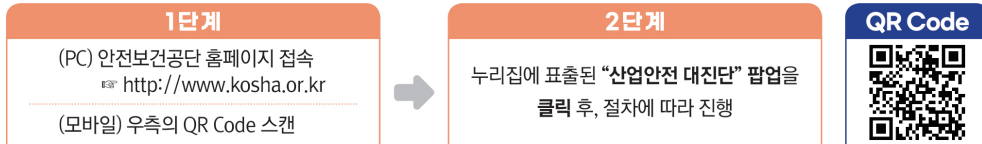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기업(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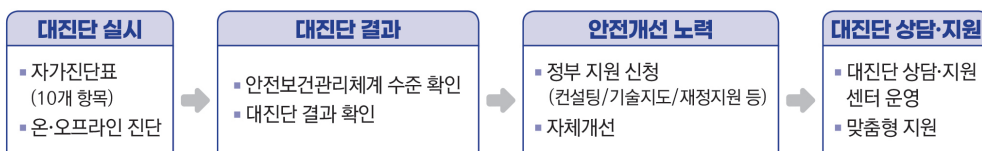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 ▶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사업장 비용 부담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			
	구분	자부담 부과 없음	자부담 부과	
			(수수료 3만원/회)	(수수료 12만원/회)
제조업 등	근로자수 5~29인	근로자수 30~49인	근로자수 50인 이상	
건설업	(종합) 1천위 초과 (전문) 200위 초과	(종합) 301~1천위 (전문) 20~200위	(종합) 201~300위 (전문) 20위 이내	

※ 자부담금은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기관에 납부,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 시 컨설팅 지원 종료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2~4개월, 제조업 등 4~5회, 건설업 7회)
	민간 전문기관 안전·보건관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인, 노무법인 등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건설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 관할 광역본부에서 사업장에 접수 결과 및 컨설팅 기관 배정상황 등을 안내 예정
	▶ 사업장 소재지별 공단 문의처

제조·기타업

URL주소
https://kras.kosha.or.kr
(PC 사용 권장)
컨설팅 신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QR코드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서울 광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서울, 강원도 *강원도 철원 : 인천광역본부 ■TEL 02-6711-2967, 2972 ■FAX 02-6711-2959 ■E-mail eunsun@kosha.or.kr
부산 광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부산, 울산, 경남 ■TEL 051-520-0534, 0529 ■FAX 051-520-0539 ■E-mail seonghee@kosha.or.kr
광주 광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TEL 062-949-8747, 8748 ■FAX 062-944-8273 ■E-mail gjcg@kosha.or.kr
대구 광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대구, 경북 ■TEL 053-609-0526, 0535 ■FAX 053-421-8629 ■E-mail cgd9@kosha.or.kr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인천 광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인천,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도 철원군 ■TEL 032-510-0605, 0606 ■FAX 032-575-7287 ■E-mail kimhd@kosha.or.kr
대전세종 광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TEL 042-620-5619, 5611 ■FAX 042-632-4787 ■E-mail jspark427@kosha.or.kr
경기지역 본부	■사업장 소재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안산, 시흥, 안양, 군포, 과천, 의왕, 광명, 성남, 하남, 이천, 경기광주, 여주, 양평 ■TEL 031-259-7172, 7173 ■FAX 031-259-7120 ■E-mail mh.baek1@kosha.or.kr
중소기업 중앙회	■TEL 02-2124-3273 ■FAX 02-786-1892 ■E-mail mkroh@kbiz.or.kr

건설업

URL주소
https://www.kosha.or.kr/survey/s.jsp?p=744_

QR코드



주관기관	연락처	주관기관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TEL 02-6711-2871, 8279	인천광역본부	■TEL 032-510-0581~0588
부산광역본부	■TEL 051-520-0592~0590	대전세종광역본부	■TEL 042-620-5621~5629
광주광역본부	■TEL 062-949-8791~8797	경기지역본부	■TEL 031-259-7135~7145
대구광역본부	■TEL 053-609-0592~0590		

07.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자

1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및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외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예산규모 120억원)
- (지원기간) 계약체결일 ~ '24년 12월 ※ '24년 최대 8개월간
- (지원비용)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 참여사업장 수 및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협·단체에서 2명 이상 채용가능

3 참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공단 31개 일선기관에 온·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메일) 접수 (✉ jsa@kosha.or.kr)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부

4 자격기준 등

-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경력)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② (경력)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③ (자격)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술사(전기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지도사(전기, 화공, 기계)에 한함
- (공동안전관리자 주요업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① 사업장내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상시교육 실시
 - ② 현장컨설팅 및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함

08.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요지 등의게시 등)에 따라 사업장에 게시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감독자는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그 업무만 전담 함 (정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24조[산업안전보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제25조[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작성 의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횟수/인원에 따라 부과) 특별안전보건교육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	제29조[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교육: 비사무직(반기 12시간), 사무직(반기 6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1시간 이상), 그 외(4시간 또는 8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직 근로자(2시간 이상), 그 외(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학교(기관)장 연간 16시간 교육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 날인 포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횟수/인원에 따라 부과) 특별안전보건교육 3천만원 이하 과태료
6	제34조[법령요지의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7	제36조[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9	제38조[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방지: 리프트, 크레인, 동근톱, 프레스 등 방호장치 전기, 열, 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등 위험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	제39조[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기/흙/미스트 및 방사선/ 소음진동 및 정밀공장/ 단순반복 및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1	제40조[근로자의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5만원 이하 과태료
1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 거짓보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3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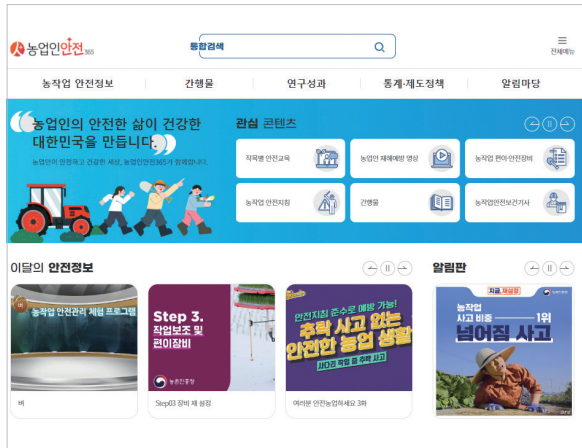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4	제57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발생 보고(※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 부상 시: 3일 이상 휴업 시 1개월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업무상 질병인 경우, 승인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재해발생(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중대재해 3천만원 이하, 산업재해 1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5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10억원 이하 과징금
16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7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장소, 자료 지원 *경보체계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설치 협조 *관계수급인 등에 대한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확인 	500만원 이하 벌금 위생시설 미협조(1500만원 이하 과태료)
18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9	제80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실시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등 방호조치 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20	제93조[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국소배기장치(49종 50% 초과), 원심기(산업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로봇은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1	제114조~115조[물질 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경고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2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 [석면해체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함.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3	제125조[작업환경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4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설치 1천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25	제129조[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확인서 보관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2, 23]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6	제164조[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발생기록,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등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27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량물 취급 주의 표지부착, 올바른 작업자세 교육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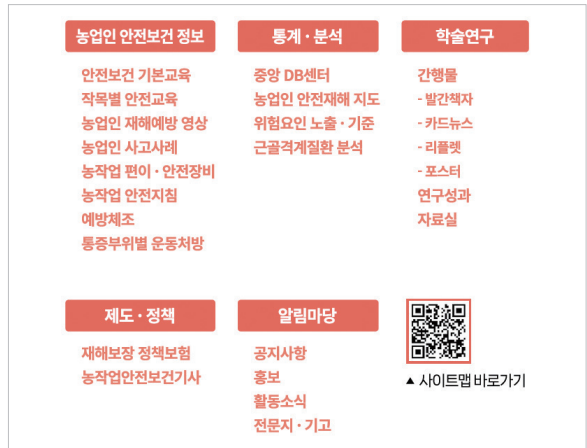
09. 농업인안전365 홈페이지 안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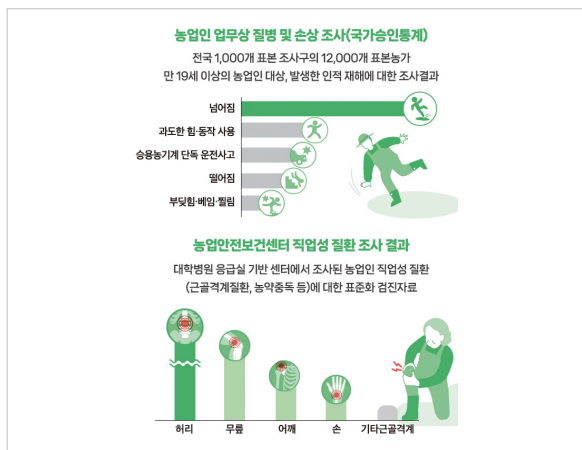
정보서비스 한눈에 보기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농작업 편이장비·개인보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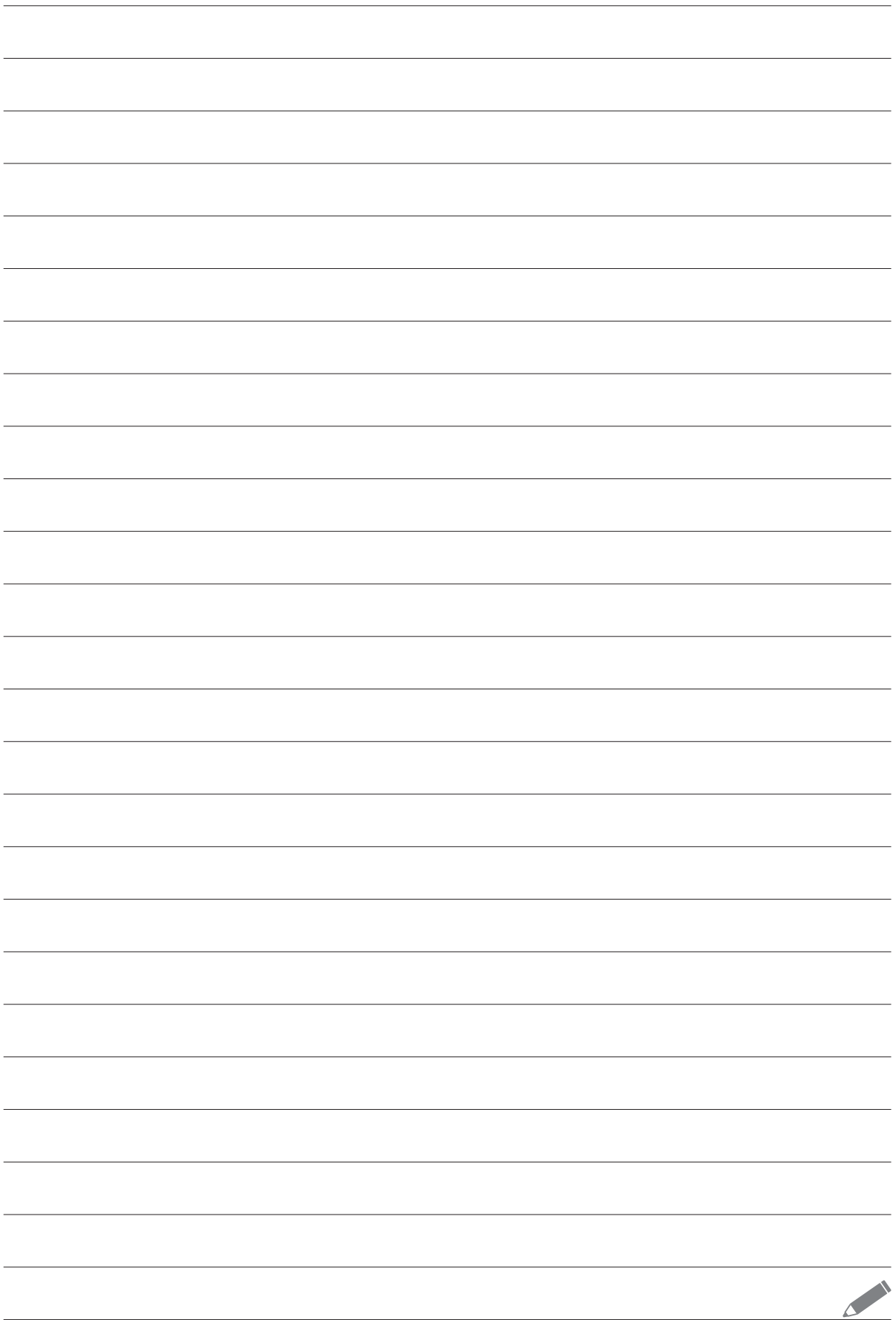


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



교육 콘텐츠

프린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대응 방안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발행일 : 2024년 3월

발행인 : 농촌진흥청장 조재호

편집인 :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편집기획 : 농업인안전팀장 김경란

편집위원 : 농업인안전팀 최동필, 채혜선, 김임경, 유지현
안전재해예방공학과 김경수, 정원건

감수위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창수, 나종문

발행처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

전화 : 063-238-1034

발간등록번호 : 11-1390000-005059-01

ISBN : 978-89-480-8256-2 93520

*자료협조(사진 및 삽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팀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Tel. 063-238-1034

농업인 안전정보는

 농업인안전³⁶⁵
<http://farmer.rda.g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대응 방안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농촌진흥청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www.rda.go.kr

